

인천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가단25530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권오용

변 론 종 결 2022. 5. 4.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2018. 12.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1.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138,35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6,624,225원을 242,762,58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과 소외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1) 신용보증기금은 2012. 11. 19.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88,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2. 11. 19.부터 2013. 11. 18.까지, 채권자를 G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액을 8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3. 11. 18., 대출예정금액을 110,000,000원(보증비율 80%)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A은 2012. 11. 23.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G은행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수차례 신용보증 조건을 변경하여 2019. 5. 20.경 최종적으로 위 보증의 기한을 2020. 5. 15.로 연장하여 주었다.

2) 신용보증기금은 2016. 10. 14. A과 사이에 추가로, 신용보증원금을 122,4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6. 10. 14.부터 2024. 10. 11.까지, 채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액을 122,400,000원, 보증기한을 2024. 10. 11., 대출예정금액을 136,000,000원(보증비율 90%)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A은 2016. 12. 12.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3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1) A은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H의 대출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0. 2. 28.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G은행에 71,564,857원을,

2020. 3. 2.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에 85,731,31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지출한 비용은 416,070원이고,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위 최초 이행일인 2020. 2. 28.부터 연 8%이다.

다. A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A은 2018. 12. 26. 그 소유의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 채무자를 A,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접수 제470360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및 배당표 작성 등

1) 이후 소외 I 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20. 12. 23. 인천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21. 10. 6.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2) 이후 2021. 11. 2.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138,355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채권자	배당이유	배당액(원)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근로복지공단 채당금 배당금	9,522,750
"	계양구 당해세 배당금	906,170
J 주식회사	근저당권부질권자	224,115,000
I 주식회사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67,485,000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 배당금	483,510
C(피고)	근저당권자	76,138,355
부천세무서	압류권자(파산선고전 압류)	47,752,150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 배당금	10,935,400
#	채무자 겸 소유자(잉여금)	144,776,395

마. A에 대한 파산선고 및 원고의 소송수계 등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2020. 3. 13.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9. 17. 파산선고(인천지방법원 2019하단4260호)를 받았고, 원고는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는 2020. 11. 6.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2021. 11. 2. 부인의 소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배당이의의 소 내용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이 전액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은 파산채권자가 될 수 없는 이상, 신용보증기금이 파산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소송수계 및 청구취지 변경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이 사건 소송은 당초 소송이 접수되어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이 전액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의 위 구상금채권이 전액 변제되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138,355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242,762,58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이 전액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파산채권자가 될 수 없다.
- 2)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였고, 그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 3)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2018. 12. 26.)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자신의 금전 차용에 대하여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하여 준 것이므로, 채무자인 A의 사해행위 내지는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 4) 피고는 2018. 5. 1. 1,000만 원, 2018. 5. 2. 3,000만 원, 2018. 5. 4. 3,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A에게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고, 그 당시 A이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였다.

4.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가 없고(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등 참조),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가 정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의 재산상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가) 적극재산

갑 제6, 13 내지 16, 23 내지 2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7,192,383원에 이르는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이 가지고 있는 300,000,000원(= 60,000주 × 1주당 5,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 H의 주식 60,000주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회사는 비상장 회사인데, 주식회사 H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회사의 주식이 순자산 내지 수익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 A이 보유한 주식회사 H의 주식이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용이하게 환가될 수 있는 자산이라거나 변제받기가 용이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이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되는 공동담보로서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번	재산명세	가액(원)
1	이 사건 부동산	380,000,000
2	전남 고흥군 K 전 298㎡	1,066,840
3	전남 고흥군 L 전 740㎡	3,411,400
4	전남 고흥군 M 전 866㎡	3,827,720
5	전남 고흥군 N 임야 625㎡	825,000
6	전남 고흥군 O 대 181㎡	1,810,000
7	P 해약환급금	4,940,010
8	2008년형 엑티언 스포츠차량 (차량번호 1 생략)	1,311,413
합계		397,192,383

나) 소극재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Q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의 소극재산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487,168,600원 상당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채무자인 A이 이러한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A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중 1인인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A의 행위는 특정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A은 장차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담보를 제공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이 전액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의 위 구상금채권이 전액 변제되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상의 고의 부인 제도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에서 특정채권자의 이익이 아닌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처우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주관적으로 그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전속적으로 당해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므로, 특정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그 성립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에서의 신용보증기금의 위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신용보증기금의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부인의 소에서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 역시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피고는 A의 처남으로서 서로 인척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원고의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기한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 제4호를 근거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법원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부인됨으로써 부인권 행사 시점에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모두 상실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138,355원은 삭제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범진

별지